



2019년 공주시민 자전거보험 안내

공주시민이라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

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

구분	보장내용	보장금액
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	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	2,000만원
자전거사고 후유장해	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	2,000만원*장해지급률
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	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(최초 진단기준, 1회에 한해 지급)	· 진단 4주(28일)이상: 10만원 · 진단 5주(35일)이상: 15만원 · 진단 6주(42일)이상: 20만원 · 진단 7주(49일)이상: 25만원 · 진단 8주(56일)이상: 30만원 ※단, 4주(28일)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입원위로금 10만원 지급
자전거사고 벌금	자전거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(만14세 미만 제외)	1사고당 2,000만원 한도
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	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(만14세 미만 제외)	1사고당 200만원 한도
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	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(만14세 미만 제외)	피해자 1인당 3,000만원 한도

※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자전거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, 15세미만자는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자전거 사고의 정의

-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- 도로 통행중의 피공제자(공제대상자)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
보험가입자 : 공주시 / 보험사 : MG생명보험 / 보험기간 : 2019. 3. 17. ~ 2020. 3. 16.

피보험자 : 모든 공주시민 자동가입 / 보험수익자 : 피보험자 본인(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)

보험금 청구 및 문의 : 백제새마을금고(본점: ☎854-0077 Fax. 856-2580/ 신관점: ☎881-4080 Fax. 881-4083)